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

Http://www.legalexpert.co.kr

Tel. 02) 3355-7000 | Fax. 02) 6280-7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16번지 동현빌딩 7층

의료사고와 해당 판례고찰 (치료처치 측면)

■ 판례 1

타 전문분야 진료에 있어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면 종합병원에 이송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아니다. (대법원1989.11.14.선고 89도1568판결)

■ 판례 2

치료방법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다. 생후 2년9개월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가 된채 제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그 당시 위 병원과 그 지역에서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복 수술밖에 없었고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수도 있고 관망 할수도 있는 상태였다.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중 환자가 그 이튿날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일어 났다고 하

더라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 할수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혹은 보통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행위라고 할수 없다.(대법원 1989.9.8선고 86다카2095판결)

■ 판례 3

복강내 췌선중에 결장천공 및 결장루의 발생은 의료상의 과실이다.(서울북부지원 1989.2.22선고 87가합400)

■ 판례 4

외상성 장파열을 오진하여 마비성 장폐쇄증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하였다면 과실이 아니다.(대법원 1984.4.24.선고82도1882판결)

■ 판례 5

의료사고의 과실판단은 진료할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

■ 판례 6

일산화탄소 환자치료후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재차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의 과실이다.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 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

르고 퇴원 즉시 다시 취침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
라면 의사는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과실과 재차 일산화탄
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2.12.선고90도2547판결)

■ 판례 7

분쇄골절환자를 통기브스하여 혈관조직을 괴사케하는 결과를 가
져오게 한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부
산지법1978.5.31선고77가합1653판결)

■ 판례 8

복합골절이 있는 환자를 통상 가능한 치료방법과 기계의 이용등
을 충분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합할 상하의 골편을 충분히
견인하지 않고 정복에대한 충분한 확인도 없이 전위하여 접합하
고 접합후도 렌트겐이 없었던 탓으로 검사확인이 나태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다.

■ 판례 9

골절상을 치료함에 있어 피해자의 요청에의하여 접합판을 조기에
제거한후 재골절이나 만곡이나 전위등의 발생으로 재입원해야하
는 상처를 입혔다면 의사의 과실이다.(1969.010.14 69도991 형
판집 66-5)

■ 판례 10

넬리 보급되지 않은 치료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의사의 과실이라 할 수는 없다(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민사부, 1974. 6. 26. 판결).

■ 판례 11

의사지시로 간호사의 주사후 야기된 후유증에 대한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법률적 판단은 간호사의 주사로 신경마비가 후유증으로 생긴 경우, 환자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일본 후쿠지마 지방재판소, 1972. 7. 21. 민사 제1부 판결).

■ 판례 12

경증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도 없이 갑자기 혈당강하제를 투여한 것은 진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일 대판지재 소화 52.2.25.선고 소491124판결) 직접 혈당검사 없이 문진만으로 당뇨병진단을 하고 투약을 계속하다가 중증에 빠진 사건으로 의사는 현재 의료수준에 알맞는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사가 약품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사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에게 이를 미리알려줄 의무가 있다. 또한 약품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등도 경시해서는 안된다.

■ 판례 13

의사로서의 치료방법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하였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도 없는한 의사로서 과실이 없다(일 최고재 소화 54.11.13. 선고 소 52 915판결) 미숙아에게 산소공급을 하여 시력상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병원및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미숙아에 대한 산소공급량의 적정조절은 미숙아망막증 예방에 선결 연구과제이며 의사의 면책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 판례 14

촉농증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의사로서의 불가피한 사정을 특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 책임을 면치 못한다(일 동경고재 소화44.5.30.선고 소41 2734 판결) 불법행위에서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종전 일반원칙과는 달리 이 판결은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고 있다.

■ 판례 15

전기메스기의 케이블을 잘못 설치한 자에게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만을 담당한 의사에게는 케이블 오접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일, 소화49.6.29판결) 전기메스기를 이용한 수술과정에서 생긴 과오로 환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여 의사가 형사입건된 경우